

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

관리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	즉시	
① 매수인	성명(법인명)			주민(법인)등록번호		국적	
	주소(법인 소재지)					거래지분비율 분의	
	전화번호			휴대전화번호			
	외국인의 토지 []주택용지(아파트) []주택용지(단독주택) []주택용지(기타) 매수용도 []레저용지 []상업용지 []공업용지 []기타						
② 매도인	성명(법인명)			주민(법인)등록번호		국적	
	주소(법인 소재지)					거래지분비율 분의	
	전화번호			휴대전화번호			
계약일				잔금 지급일			
거래대상	종류	③[]토지 []건축물 () []토지 및 건축물 () ④[]분양권 []임주권 (분양금액: 원) []신규주택 []기존주택 []임대주택분양전환					
		소재지					
	⑤ 소재지/지목/면적	지목		토지면적 m²		토지 거래지분 분의	
		대지권비율 분의		건축물면적 m²		건축물 거래지분 분의	
	⑥ 계약대상 면적	토지 m²		건축물 m²			
	⑦ 대상 거래금액	원					
실제 거래가 격 (전체)	계					원	중도금 지급일
	계약금					원	
	중도금					원	
	잔 금					'원	
⑧ 종전 토지	소재지/지목/면적	지목		토지면적 m²		대지권비율 분의	
		계약대상 면적		m²			
	대상 거래금액	계				원	권리가격 원
		계약금 원		중도금 원		잔금 원	
⑨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							
중개업자	성명(대표자)			주민(법인)등록번호			
	상호			전화번호			
	사무소 소재지						
⑩ 참고사항							

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·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신고합니다.

이
호
지

매수인	(서명 또는 인)
신고인 매도인	(서명 또는 인)
중개업자	
(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)	(서명 또는 인)

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

유의사항

1. 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「소득세법」 제97조제1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2.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하고, 중개거래의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3.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,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법 제51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4. 담당 공무원이 법 제27조의2에 따라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계약서, 거래대금지급 증명서면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,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,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작성방법

- ① • ②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 ⑤의 거래대상별 거래지분을 기준으로 각자의 거래지분비율(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래지분비율은 일치해야 함)을 표시하며,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용도로 주택용지(아파트), 주택용지(단독주택), 주택용지(기타), 레저용지, 상업용지, 공장용지, 기타 중 하나에 ○표시를 합니다.
 - ③ 부동산 매매의 경우 "종류"에는 토지,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(복합부동산의 경우)에 ○표시를 하고, 해당 부동산이 "건축물" 또는 "토지 및 건축물"인 경우에는 ()에 건축물의 종류를 단독주택, 아파트, 연립주택, 공장,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습니다.
 - ④ 건축물의 주용도가 주택인 경우에만 5개의 [] 중 하나에 ○표시를 해야 합니다.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매매의 경우, "분양권" 또는 "입주권"에 ○표시를 하고, 분양금액란에는 분양권의 경우 분양금액을, 입주권의 경우 권리가격과 추가부담금의 합계금액(조합원 분양금액)을 적습니다. 건축물의 매매의 경우, "신규주택"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거래하는 주택(순차등기 조건의 거래를 포함)이며, "기존주택"은 위 신규주택의 소유권이전 등기 이후 거래하는 주택을, "임대주택분양전환"은 임대주택사업자(법인에 한함)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을 말합니다.
 - ⑤ 소재지는 지번(아파트 등 집합건축물의 경우에는 동·호수)까지, 지목/면적은 토지대장상의 지목·면적,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면적(집합건축물의 경우 호수별 전용면적, 단독건축물의 경우 연면적), 등기부등본상의 대지권 비율, 각 거래대상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거래지분을 정확하게 적습니다.
 - ⑥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,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기재하고, 단독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습니다.
 - ⑦ 대상 거래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습니다.
 - ⑧ 종전토지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종전토지에 대해 작성하고, 대상 거래금액란에는 입주권의 실제 거래가격에서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.
 - ⑨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만 적습니다.
 - ⑩ 참고사항에는 거래와 관련한 참고내용을 적습니다.
- ※ 다수의 부동산, 관련 필지, 매도·매수인, 중개업자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(간인 처리)하여 첨부합니다.